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주석 공시

가.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 1

2. 종속기업에 대한 현금출자도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세요. ··· 2

3.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에는 기말 채권·채무 잔액뿐만 아니라 기중 거래도 포함하세요. ···· 3

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였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 4

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관련

5. 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 관련 조건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 5

6. 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 6

7. 사모사채 발행 시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 7

8.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책임준공 약정 관련 우발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8

다. 기타 사항

9.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도 주석 공시사항입니다. ···· 9

10.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 10

11. 사용이 제한된 자금이 있다면 경영진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11

가.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입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당초 특수관계에 있던 기업들의 지분을 처분하고 임원 겸직을 해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자 수를 줄인 결과 '17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2인이 존재한다고 공시하였다. 회사는 '18.4월 상장주선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B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C사가 특수관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 B 및 B의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지분 22.4%를 보유하고 있어 B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였고, B 및 B의 특수관계자는 C사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개인 B가 지배하는 C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C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해야 함에도 '17년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르면 기업이 아래 (1)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보고기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1)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가)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나)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다)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같은 기준서 문단 BC19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특수관계자 정의를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3) 한 기업(또는 개인)이 두 번째 기업을 지배(또는 공동지배)하고 있고 첫 번째 기업(또는 개인)이 세 번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두 번째 기업과 세 번째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

2 종속기업에 대한 현금출자도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09년부터 '16년 1분기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았으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인 B사가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때 회사의 종속기업인 C사가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16년에 종속기업 N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때 참여하여 132억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980만주를 추가 취득하였는데 해당 거래를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 자금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제거되므로 연결실체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르면 개인이 보고기업(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기업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같은 기준서 문단 2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3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내용에는 기말 채권·채무 잔액뿐만 아니라 기중 거래금액도 포함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다. 회사의 특수관계자*인 B사는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면서 시공대가로 받게 될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지하1·2층)를 공사 완공 전에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가 해당 계약으로 받은 계약금과 관련하여 D보증보험회사와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반환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계약(피보험자: C사)을 체결할 때 회사는 해당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는데, 회사는 해당 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회사의 최대주주인 개인 A와 그 특수관계인이 B사 지분 89.7% 소유

회사는 B사에 대여한 자금 및 미수이자의 기초 및 기말 잔액은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기중 증감내역은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자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거래금액

(2)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의 사항

㈎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내역

같은 기준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였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18.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각각 80억원 및 36억원 발행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84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전환사채 발행액 합계 116억원 중 76억원은 최대주주인 A사가, 30억원은 대표이사 B가 인수하였다. 최대주주인 A사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여 52억원을 납입하였다. 회사는 '18.7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표이사 B가 보유하고 있던 C사 주식을 76억원에 매입하였다. 회사는 '18년에 이루어진 최대주주 A사 및 대표이사 B와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였지만 재무제표 주석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해당 공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거래 금액

⑵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⑶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⑷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같은 기준서 문단 2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공시하는 거래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⑵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

⑺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대여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포함)

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관련

5 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 관련 조건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16.3월에 사모전환사채[*1]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 중인 A사[*2] 주식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1 발행가액: 80억원, 발행일: '16.3.21., 전환기간: '17.3.21.~'19.2.21., 만기일: '19.3.2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발행일로부터 1년('17.3.21.)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이율/만기보장수익률: 5%, 담보: A사 주식

*2 A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 부여사실을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및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공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A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중 「Ⅲ.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하였지만 재무제표 주석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A사 주식 담보제공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가액	차입금 종류
'16.12.31.	A사 주식	4,225	8,000	사모 전환사채
'17. 3.31.		4,182	8,000	
'17. 6.30.		3,312	6,410	
'17. 9.30.		2,186	4,610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4에 따르면 (1)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37(1)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3(1)에 따라 재분류한 금액 포함)과 (2) 담보와 관련된 조건을 공시한다.

6 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인데, '10년에 A은행에서 금전을 차입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11년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고, '11년 및 '12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위 유형자산 담보 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2년 말 현재 유형자산 담보 제공 내역 및 관련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담보제공 내역 및 관련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담보 제공 자산	장부가액 ('12년 말 기준)	감정가액	담보설정액	관련 차입금 ('12년 말)
토지	1,036	2,414	4,500	3,418
건물	2,075	1,925		
기계장치	452	1,535		
합계	3,563	5,874	4,500	3,418

2. 관련 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8에 따르면 유형자산 과목별로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주석에 추가한다.

(3)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같은 기준 문단 10.4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며, 유형자산 과목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 등

(4) 기계장치: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 등

7 사모사채 발행 시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17.5월에 무기명무보증 사모전환사채 150억원을 A사와 B저축은행에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씩 발행하면서 정기예금 90억원을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에 각각 48억원과 42억원씩 담보로 제공하였고, 회사 소유 부동산 우선수익권 60억원을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에 각각 32억원과 28억원씩 담보로 제공하였다. A사는 회사의 前 감사 D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업인데,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에서 각각 30억원과 70억원씩 대출을 받아 본 건 사모전환사채 인수자금 100억원을 조달하였다.

사모전환사채 발행 내역

(단위: 억원)

발행일	만기일	인수자	인수금액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17.5.29.	'20.5.29.	A사	100	4%	5%
		B저축은행	50		

회사는 '17.6월에 위 정기예금 담보 90억원 중 60억원을 해제하는 대신 자기주식 120만주(장부금액 60억원)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는 위 사모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하면서 B저축은행과 C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의 장부금액과 해당 담보와 관련된 조건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4에 따르면 부채 또는 우발부채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담보와 관련된 조건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8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책임준공 약정 관련 우발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18년 말 현재 기성불 사업장[*1] 4곳의 시공사인데, 해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1조 1,700억원의 책임준공[*2]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대출금 잔액은 '18년 말 현재 2,886억원이다. 회사가 대주단 등에 제공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은 건설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신용보강의 한 형태로서, 해당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다. 회사는 위 4곳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PF대주단 등에 제공한 책임준공 약정 및 조건부 채무인수 관련 금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 '기성불 사업장'이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PF대출금에서 전적으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을 말하며, '분양불 사업장'이란 재건축·재개발 사업처럼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에서 상당부분 회수토록 되어 있는 사업장을 말함

*2 건설공사에서 '책임준공'이란 금융회사의 건설공사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 방식의 하나로서 시공사가 해당 건물을 책임지고 준공시키겠다는 약정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

'18년 말 책임준공약정 제공 내역

(단위: 억원)

사업장	약정상대방(차주)	대주	보증한도	대출잔액
평택	평택프로젝트금융회사㈜	A은행 등	3,400	908
서초	서초프로젝트금융회사㈜	B은행 등	2,620	991
동탄	㈜동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C생명 등	1,874	937
고척	㈜고척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D은행 등	3,806	50
합계			11,700	2,886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86에 따르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변제 가능성을 공시한다.

다. 기타 사항

9 주요 고객 의존도에 관한 정보도 주석 공시사항입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단일 영업(보고)부문에서 소수의 국내·외 완성차업체 및 부품 가공업체 등에 집중적으로 제품을 매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총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들이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총 4사, 즉 A사('16년 35.4% 등), B사('16년 16.2% 등), C사('16년 12.9% 등), D사('14년 11.2% 등)가 있었다. 회사는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주요 고객(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 34에 따르면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 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 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같은 기준서 문단 31에 따르면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인 모든 기업에 문단 34가 적용되며, 문단 4에 따르면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10 유형자산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세요.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토지에 대해 원가모형[*1]이 아닌 재평가모형[*2]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였고 해당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였지다. 하지만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 '원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함[K-IFRS 1016.30]

*2 '재평가모형'이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한하여 해당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함[K-IFRS 1016.31]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29에 따르면 기업은 문단 30의 원가모형이나 문단 31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같은 기준서 문단 37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영업상 비슷한 특성 및 용도로써 분류하는데, 개별 분류의 예로 (1) 토지, (2) 토지와 건물, (3) 기계장치, (4) 선박, (5) 항공기, (6) 차량운반구, (7) 집기, (8) 사무용 비품, (9) 생산용 식물을 들 수 있다.

같은 기준서 문단 77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서 요구하는 공시 사항에 추가하여 (1) 재평가기준일, (2) 독립적인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했는지 여부, (3) 재평가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장부금액, (4)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주주배당제한 내용을 공시한다.

11 사용이 제한된 자금이 있다면 경영진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17.8월에 운영자금 및 타법인 발행 전환사채 인수자금 등 합계 157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금융기관에 납입된 증자대금 157억원 가운데 50억원이 A사 전환사채 인수자금으로 지급되었고, 7억원은 회사 운영자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머지 100억원은 회사가 위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B사로부터 A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다른 계좌에 예치하였다. 하지만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회사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A사 지분 양수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회사는 해당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고 유보하였다.

B사는 위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이 A사 지분 취득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회사에 사용 제한 및 질권 설정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17.9월에 해당 자금에 대해 인출제한을 설정하였다. 회사는 '17.9월에 법무법인이 작성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17.10월에 한국거래소로부터 해당 거래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들은 후 B사로부터 A사 지분 100%를 취득하는 거래를 종결하였다. 회사는 '17.8월 유상증자 대금 중 100억원에 대해 A사 지분 취득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인출이 제한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회계처리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 48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중 유의적인 금액을 연결실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경영진의 설명과 함께 그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한다.